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법무021-4-132	(전화: 6556)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영구		1139
시행일자	88. 8. 11		
보조기관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법무담당관	합 조 기 관	문서 통 계 1988. 8. 11 시 장
기안책임자	박성중		인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발신 명 의	시 장
제 목	'80 서울특별시해직공무원대책실무반설치규정 발령		
제 1 안 내부결재			
1. 인사 02124-225(88.7.20)호와 관련입니다.			
2. '80 서울특별시해직공무원대책실무반설치규정을 별첨(안)과 같이 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안과 같이 시로에 게재 발령하고자 합니다.			
첨부	발령(안) 1부.	8/11	통 계 672 후
제 2 안			
수신	공보관		
제목	시보게재		

별첨 '80서울특별시해직공무원대책실무반설치규정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 발령할 것.
첨부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1부. 끝
제 3 안
수신 인사과장
제목 훈령발령
'80 서울특별시해직공무원대책실무반설치규정제정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 발령하였으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첨부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1부. 끝.

인사과장

'80서울특별시 해직공무원대책실무반상칙규정개정 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8년 8월 11일

1988. 8. 11
시 장

서울특별시장 김 용 련

2993

'80 서울특별시 해직공무원대책실무반설치규정제정(안)

제1조(설치) 제6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0년도에 해직된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 대책을 심의토록하기 위하여 '80 해직공무원대책 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소속하에 '80 서울특별시 해직공무원대책 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한다)을 둔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 규정에서 "80 해직공무원" 이라함은 1980년 7월부터 9월사이 해직된자를 말한다. 다만, 정계파면이나 당연퇴직된자를 제외한다.

제3조(실무반의기능) 실무반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이를 시장에게 건의한다.

1. 해직공무원의 실태파악에 관한 사항
2. 해직공무원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4조(실무반의구성) ① 실무반은 반장1인을 포함한 17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반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③ 실무반의 반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 | | | |
|--------------------------------|-----------|------------|
| 1. 시정연구관 | 2. 감사관 | 3. 내무국장 |
| 4. 재무국장 | 5. 보건사회국장 | 6. 산업경제국장 |
| 7. 도시계획국장 | 8. 건설관리국장 | 9. 환경복지국장 |
| 10. 교통국장 | 11. 상하수국장 | 12. 소방본부장 |
| 13. 종로구청장 | 14. 중구청장 | 15. 영등포구청장 |
| 16.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 반장이 위촉하는자 | | |

제5조 (반장의직무) ① 반장은 실무반을 대표하고 실무반의 사무를 통괄 하며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실택조사반을 지휘, 감독한다.

② 반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반장이 지명하는 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실무반의 회의는 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실무반의 회의는 제적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하고 출석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택조사반) ① 실무반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80

서울특별시 해직공무원 실택조사반(이하 "실택조사반"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실택조사반은 반장 1인을 포함한 반원 17인이내로 구성한다.

- ③ 실택조사반장은 내무국장이 되며 실택조사반원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위원이 되는 각국의 주무과장과 해당구의 총무국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자가 된다.

제8조 (기관별 실택조사반의 설치) ① 실무반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소속 기관 별로 '80 해직공무원 대책기관별 실택조사반(이하 "기관별 실택조사반"이라한다)을 둔다.

- ② 기관별 실택조사반의 반장은 해당기관의 총무국장(총무국장이 없는 기관은 이에 상당하는자를 포함한다)이 된다.

- ③ 기관별 실택조사반의 회의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실무반의 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실무반은 안건의 심의 및 기타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그 산하 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실무반에 간사1인을 둔다.

- ② 실무반의 간사는 인사과장이 된다.

- ③ 간사는 실무반장의 명을 받아 실무반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회의록) 실무반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실무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반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반의 의견을 거쳐 반장이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실무반의 존속기간) 실무반은 이규정 시행후 6개월간 존속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반의 의결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